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04.11.15.<규정 제63호>
개정 2006.05.30.<규정 제84호>
개정 2006.12.21.<규정 제97호>
개정 2007.02.23.<규정 제99호>
개정 2008.08.18.<규정 제121호>
전부개정 2009.02.06.<규정 제126호>
개정 2013.09.30.<규정 제211호>
개정 2014.10.10.<규정 제243호>
개정 2015.11.06.<규정 제250호>
개정 2016.03.23.<규정 제257호>
개정 2016.10.27.<규정 제261호>
개정 2017. 9. 6.<규정 제267호>
전부개정 2018.10.31.<규정 제276호>
개정 2019.10.30.<규정 제310호>
개정 2020.03.30.<규정 제323호>
개정 2020.06.02.<규정 제344호>
개정 2022.01.24.<규정 제377호>
개정 2022.10.28.<규정 제415호>
개정 2023.11.29.<규정 제443호>
개정 2024.02.19.<규정 제452호>
개정 2024.12.12.<규정 제4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
하고 진행중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 예산, 감사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직접 관련된 임
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및 파견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10.28>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10.28>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10.28>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공사, 공사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2.10.28>

③ <삭제 2022.10.28>

제9조(수의회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공사, 공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회약(이하 “수의회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사, 공사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회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2.10.28>

③ <삭제 2022.10.28>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2022.10.28>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 청탁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0>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

- 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 ·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 ·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 법인 · 단체가 선정 ·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 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업무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검사 및 반입감시에 관한 사항
2. 부지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 · 용역 · 구매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삭제 2022.10.28>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공사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회사를 포함하여 공사가 대주주로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에 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및 공사가 대주주인 업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10.30.]

제2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장이 공사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임직원은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공사 임직원에게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공사에 대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직원 등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30.]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거래 상대방의 핵심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7.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8.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임원(본부장급 포함)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은 제2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 및 신고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외부강의에 따른 출장 신청시에는 요청 공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2., 2024.12.12.>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6.2>

⑤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0., 2023.11.29., 2024.12.12.>

⑨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접수는 별도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

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10.28>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술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사행성 행위 등 제한)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마작·화투·카드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공사에 복귀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된 사항을 별지 제23호 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공사의 사장, 공사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책임관과 사장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사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

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제1항 별표4의 비위유형별 징계양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적용은 이 규정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제31조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준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임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되, 인사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임원을 제외한 이사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 위반으로 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비위행위자를 비사건 부서로 전보 조치할 것을 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33조의2(부패 임직원 현황 공개)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를 위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임직원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의 유형
2. 관련 금액

3. 징계의 종류

제34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각 공직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준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전환일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신규 임용자(비정규직 포함) : 2시간 이상

2. 2급 이상 승진자 : 2시간 이상

3. 임원으로 임명된 자 : 5시간 이상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준수서약) 사장은 이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행동강령준수서약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개정 2020.3.30., 2024.2.19., 2024.12.1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제32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청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반부패 청렴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는 부패방지 청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반부패 청렴추진단의 위원장은 감사가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처·실장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3.30>

③ 반부패 청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이 강령의 유지·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2. 반부패 청렴업무의 추진·실행·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0.28>

4. 기타 부패방지·청렴 업무의 수행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임원, 본부장 및 각 처·실장이 선도하는 청렴교육의 실시 등 행동강령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3.30>

④ 반부패 청렴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8.10.31.>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18. 10. 31.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수익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익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0.30>

이 강령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30>

이 강령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6.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24>

이 강령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28>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2. 10. 28.부터 시행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 내지 제10조, 제20조, 제26조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이 강령 시행 전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3.11.29>

이 강령은 2023. 11.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2.19>

이 강령은 2024. 02. 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2.12.>

이 강령은 2024. 12. 13.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22조제3항 관련) <개정 2022.1.24., 2023.11.29., 2024.12.1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

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개정 2022.10.28>

금지·제한사항별 처분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

위 반 사 항	구분	처분기준	
		주의·경고	경징계 이상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 ○ 특혜의 배제 위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인사청탁, 불투명한 회계관리, 이권개입 ○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 직무관련 퇴직임직원에 대한 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위반 ○ 금전의 차용금지 등 위반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 및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의 경조 금품 수수	경미한 사항	○	
	중한 사항		○

주) 경미한 사항 :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과실인 경우

중한 사항 : 비위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2.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위 반 사 항	구분	처분기준	
		주의·경고	경징계 이상
○ 10만원 초과	경미한 사항	○	
	중한 사항		○

주) 경미한 사항 :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과실인 경우

중한 사항 : 비위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3.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미이행

위 반 사 항	구분	처분기준	
		주의·경고	경징계 이상
○ 1차 미이행	경미한 사항	○	
	중한 사항		○
○ 2차 미이행			○

주) 경미한 사항 :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과실인 경우

중한 사항 : 비위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4. 사행성 행위 등의 제한 위반

위 반 사 항	구분	처분기준	
		경고	경징계 이상
○ 마작, 화투, 카드 등 도박행위 - 임직원 간의 행위 ※ 직무관련자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비위정도에 관계없이 경징계 이상 처분	경미한 사항	○	
	중한 사항		○
○ 경마장, 카지노, 오락실 등에서 의 사행성 행위	경미한 사항	○	
	중한 사항		○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 사전신고·사후보고 미이행 - 접대 수수행위 - 근무시간 중 행위		○	○ ○

주) 경미한 사항 : 비위정도가 경미하고 과실인 경우

중한 사항 : 비위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5.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삭제 2022.10.28>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제1항 관련> <삭제 2022.10.2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삭제 2022.10.2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삭제 2022.10.2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6호서식] <제5조제3항 관련> <삭제 2022.10.2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7호서식] <제5조제6항 관련> <삭제 2022.10.2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8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삭제 2022.10.28>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삭제 2022.10.28>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 구 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이
한
문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19호 서식] <제26조제1항 관련> <삭제 2022.10.28>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	--	--	---	--

신고취지 및 이유				
--------------	--	--	--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	-----------	--	--	--

비고				
----	--	--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소 속		직 책		성 명		
비용부담							
사 유							
비 고	(비용부담은 본인여부, 신용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20 . . . 신고자 (서명)							

[illegible]